

『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
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하수도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-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
 - 「구미시재무회계규칙」 개정으로 단위사무명 수정
 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사무위임사항(권한위임)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·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